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진술조력인 참여 및
신청 고지 의무 신설〉

■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5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노중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5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노중면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19.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참여 근거 및 신청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진술조력인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직권이나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발달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진술조력인에 의

현행	개정안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u>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으로, “19세미만피해자등”을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를 “조사 또는 수사”로, “증인 신문”을 “신문”으로 본다.</u> 제42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u> 2.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2025. 3.~5.)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 관계인의 도움을 받은 인원이 27명(2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또는 전담 검사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²⁾

현행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 조력 제도의 이용·고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이 같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조력 필요성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³⁾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그 신청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진술조력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와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

1) 전국교정청 산하 수용시설에는 기결·미결수 포함, 총 262명의 발달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중 127명을 면담함.

2) 국가인권위원회. (2025. 12. 1.).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직권조사(24직권0001000 결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술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모든 문항을 직접 응답한 비율은 6.2%에 불과했고, 보호자가 모든 문항을 대신 응답한 비율은 45.5%로 나타났다.⁴⁾

□ 다만, 개정안은 ① 현행법상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인 관계, ② 진술조력인에 대한 제재 수준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와 현행법상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간 기능과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 신뢰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진술조력인을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4) 김성희 외. (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제도와 함께 운영될 경우 각각의 역할과 참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⁶⁾⁷⁾

- 보조인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신뢰관계인은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진술환경 조성을 위한 동석자에 가까운 반면,⁸⁾
- 진술조력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질문과 답변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점에서 기능상 차이가 있음.⁹⁾

따라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의사소통 중개·보조로 명확히 하고,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과 병행 참여할 경우 각 제도의 기능이 구분될 수 있도록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서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진술조력인이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신뢰관계인의 역할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에 신뢰관계인의 정의와 역할 및 이행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5. 12. 1.).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직권조사(24직권0001000 결정)).

7) 김지영·황지태·김강원·정제형, (2022). 지적장애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8) 김지영·황지태·김강원·정제형, (2022). 지적장애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 이진국, (2013).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24(3), 31-56.

반면, 개정안이 준용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진술조력인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면서, 진술조력인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술조력인의 공적 책임성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¹⁰⁾

진술조력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과정에서 수사·재판 내용뿐 아니라 장애 특성,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게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재 수준이 진술조력인의 직무상 책임 및 유사 입법례와의 형벌 균형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와 현행 법률상 유사 조력 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참고자료 1: 관련 법률 조문).

-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 또는 증인이 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보조인 참여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조력인 참여 및 신청 가능성 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반면,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
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신청 가능
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양성, 수
사·재판과정 참여,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신문·피의자신문 등에서 증인·피의자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
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법상 유사 제도 비교 >

구분	개정안	현행법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① 진 술 조 력 인	(근거조항)안 제 12조의2 (역할) 발달장애 인의 의사소통 중개·보조 (신청·고지)법원 · 수사기관의 직 권 또는 본인· 보호자·발달장 애인지원센터장 의 신청 / 본인 · 보호자에게 신 청 가능성 고지 (비밀유지·벌칙) 안 제42조제1호의2 비밀누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조항)제59 조의16 (역할)범죄피해 장애인의 의사소 통 중개·보조 (신청·고지) 검 사·사법경찰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보 조인의 신청 / 피해자·보조인 에게 신청 가능 성 고지 (비밀유지·벌칙) 성폭력처벌법 제 36조부터 제39조 까지 준용, 자체 벌칙 없음	(근거조항)제35조 부터 제39조까지 (역할)의사소통 · 의사표현이 어 려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소 통 중개·보조 (신청·고지) 수 사기관·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 자·법정대리인 · 변호사의 신청 / 신청 가능성 고지 (비밀유지·벌칙) 제38조제2항, 제 50조제2항제1호, 비밀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

구분	개정안	현행법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② 신뢰관계인	-	(근거조항)제 12조제3항·제4항 (역할)증인신문 ·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 및 의사소통 보조 (신청·고지)본인 · 검사·보호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의 신청 / 고지 없음 (비밀유지·발착) 없음	(근거조항)제59조의8제2항·제3항 (역할)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의사소통 보조 (신청·고지)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 법원 허가 / 고지 없음 (비밀유지·발착) 없음	(근거조항)제34조 (역할)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진술환경 보조 (신청·고지)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 / 고지 없음 (비밀유지·발착) 없음	(근거조항)제163조의2, 제221조제3항, 제244조의5, 제276조의2 (역할)피해자·피의자·피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의사소통 보조 (신청·고지) 법원·검사·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신청 / 고지 없음 (비밀유지·발착) 없음
③ 보조인	-	(근거조항)제 12조제2항·제4항 (역할)법원 심리과정 등에서 발달장애인 조력 (신청·고지)법원 허가 / 고지 없음 (비밀유지·발착) 없음	(근거조항)제59조의8제1항·제3항 (역할)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조력 (신청·고지) 법원 허가 등 / 고지 없음 (비밀유지·발착) 없음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관련 법령을 검색한 후 정리함.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현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 조력제도인 보조인·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은 그 자격과 역할 범위가 상이함.

- 「장애인복지법」에서 준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 진술조력인은 범죄피해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로,

-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인 발달장애인에게도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의 수단으로서 의사소통 중개·보조인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본질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존 법령상 진술조력인의 양성·자격부여·교육 등에서 피의자·피고인 특성을 고려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원과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안의 벌칙(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유사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수위(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현저히 낮아 법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관련 법률 조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의 죄

6. 제35조의3(이 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제3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5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 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